



-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“임대사업자”를 “임대사업자”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“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”으로 하고
-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의 정비와 도시계획세 면제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(안 제11조)

· 지방세법 : 재산세 면제(지방세법 제273조제2항),

· 조 레 : 도시계획세 면제

-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(2005년 12월 31일 이전등록)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2010년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한 것으로
-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음.(안 제15조의5)

○ 검토결과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

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감면규정을 정비 하였으며,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함으로서 과세 형평성과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, 입법예고 등 절차 거쳐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가 어떤 차종인지?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?
- 답 : 무쏘 벤 등의 차종으로 승차인원이 5인승 차량이 해당되며, 2006년 이후에는 해당차종이 승용차로 분류되어 등록 되고 있으며, 2006년 이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만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.

## 7. 토 론 : 없음

## 8. 심사결과 :

-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